

# 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50-8411 / 전송 (02)750-8413  
 처리부서 : 농수산유통과(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515호) 담당 권신태

문서번호 농유 51191 - 497  
 시행일자 1997. 2. 25  
 (경유) (제1안)  
 수신 내부결재  
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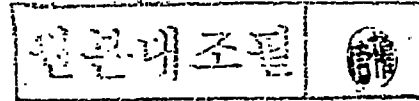


취급		시	장
보존		농 2.25 1	
농수산유통과장	전결		
유기농업계장		법무담당관	
기안	권 신 태	협조	

제목 '97 병해충 방제계획 고시

1. 농림부 농유51191 - 92('97.1.11)호와 관련입니다.
2. 위호 계획에 의거 식물방역법 제20조제4항 규정에 의거 우리시 '97 병해충 방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(안) 1부. 끝.



(제2안)

수신 : 받는곳참조

제목 : '97 병해충 방제계획 고시 통보

1. 농림부 농유51191 - 92('97.1.11)호와 관련 식물방역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'97 병해충 방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통보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(안) 1부. 끝.

# 서울특별시

수신처: 농림부장관(환경농업과장), 노원, 은평, 마포, 강서, 구로, 서초, 강남, 송파, 강동(농업담당과장),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장.

(제3안)

수신 : 공보담당관

제목 : 시보 게재의뢰

1. 다음과 같이 시보 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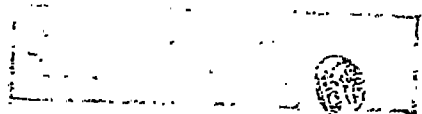
나. 계 재 명 : '97 병해충 방제계획

다. 근거법규 : 식물방역법 제20조제4항.



붙임 : 고시문3부.

## 농수산유통과장



고 시 (안)

24	심사	1997. 2. 24	제	호
담당자	법제심사제장	부	담당	관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7 52호

'97 벼 병해충 방제계획 고시

식물방역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'97 벼 병해충 방제 계획을 수립하였기 같은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1997. 2.

서울특별시

1. 기본방향 : 병해충으로 인하여 쌀생산에 증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경우 일제 공동방제 실시로 쌀증산에 기여함.
2. 방제대상지역 : 시내일원
3. 방제계획면적 : 2,736 ha (벼재배면적 : 684 ha X 4회)
4. 방제기간 : '97. 5. 20 - '97. 10. 20 (기간중 병해충방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기 선정사항)
5.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
  - 가. 병 해 : 잎도열병, 이삭도열병, 잎집부늬마름병, 흰잎마름병.
  - 나. 충 해 : 벼불바구미, 벼멸구, 흰등멸구, 이화명나방, 흑명나방.
6. 방제요령 : 지역실정에 맞는 방제일시를 결정하고, 모든 가용 인력과 방제 기자재를 총동원하여 일제 공동방제 실시
7. 사업비 지원계획 : 36,870천원(시비:12,210천원, 구비:10,660천원, 기타지원:14,000천원)
8. 기 타 :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자치구 지역 실정에 맞도록 계획 수립·시행